

가금 및 가금산물 이력제 추진 방향



축산물품질평가원
최규진 이력사업본부장

2003년 국내에서 최초로 발생한 고병원성 AI는 2014년부터는 매년 겨울을 지나치지 않고 있다. 특히 2016년 11월 발병한 AI로 인해 산란계 사육 마릿수의 36%를 매몰하는 등 축산농가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또한 산란계에 피해가 집중되어 계란 수급에 차질이 생겨 값이 치솟는 등 소비자 피해도 커졌다. 이와 함께 닭, 오리고기의 경우 AI로 인한 인체 피해가 없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발병 기간 중 소비가 감소하여 가금산업을 위축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먹거리에 대한 국민 불안은 지난 해 8월 충격을 준 살충제 계란 문제로 심화됐다. AI에 이어 불거진 살충제 계란 문제는 가금산업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을 키우는 단초가 됐다. 이에 따라 AI와 같은 가축질병으로부터 소비자의 불안감을 덜어내고, 높아지는 식품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반영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정부는 살충제 계란 문제를 해결하고, AI로 인한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당초 2020년 도입 예정이었던 가금 및 가금산물이력제(이하 ‘가금이력제’)를 2019년 도입한다고 발표하였다.



2009년 쇠고기이력제로 시작한 축산물이력제는 2014년 돼지고기까지 확대하며 축산물의 안전성과 신뢰를 높이는 제도로 자리를 잡았다. 이러한 경험과 시스템을 바탕으로 가금 및 가금산물의 안전성까지 높이기 위한 계획을 밝힌 것이다.

가금이력제에 대하여

가금이력제는 “가금 및 가금산물이 생산되는 생산단계와 유통단계의 거래정보를 기록·관리하여 위험요소 발생 시 신속한 회수와 조치를 가능토록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소·돼지처럼 가금(닭·오리) 및 가금산물(닭고기·오리고기·계란)도 이력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정부는 관련 법규 개정과 이력시스템 구축을 통해 올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본 고에서는 가금이력제 추진개요와 시범사업 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본다.

농장부터 판매까지 이력관리체계 마련

가금이력제는 크게 생산단계과 유통단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행주체의 이력번호 표시와 신고(장부)관리로 진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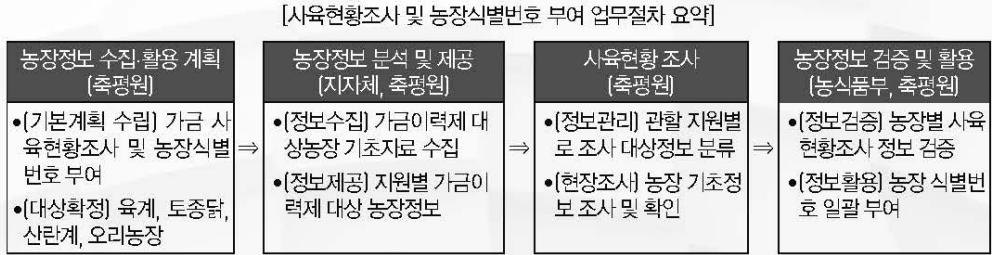
이력제 사업의 첫 단계는 가금 사육농장의 사전조사를 통해 농장식별번호를 부여하는 것이다. 농장식별번호는 가금류를 사육하는 장소의 해당 지번에 부여되며 가금농장은 물론 계란 집하장과 부회장에도 부여된다.

<사육단계>

가금이력제 실시에 따라 가금(닭·오리) 사육시설에 고유번호(농장식별번호)를 부여하게 된다. 농장식별번호 부여는 현장조사를 통해 이루어지며, 농장조사는 주로 축산물품 질평가원에서 전화 예약 후 현장방문을 통해 진행될 계획이다. 실제 조사는 사육시설 방문에 따른 가축질병 발생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므로 농장 내부 출입은 하지 않고, 주로 농장 밖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다.

그러나 가금농장을 찾기도 쉽지 않으므로 농장경영자의 자발적인 신청과 현장 조사 시지자체 및 관련 협회 등의 지원도 필요하다. 이렇게 부여된 농장식별번호는 사육단계 이력제 시행의 첫 단계이며, 농장경영자는 농장식별번호가 부여된 농장별로 매월 사육현황 신고를 해야하며 농장간 이동시 이동신고를 해야 한다.

* 농장식별번호 : 이력관리대상가축을 기르는 사육시설을 식별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가축사육시설마다 부여하는 고유번호



사육단계의 이력관리 요령은 다음과 같다.

- ◎ **(적용축종)** 육계, 신란계, 토종닭, 오리
 - 세부 대상 : 원종계, 종계, 쌔일(종란), 육계, 신란계, 종오리, 육용오리, 삼계, 토종닭
- ◎ **(농장식별번호 부여대상)**
 - 축산업 허가제 및 기금을 판매하는 등록제 농장, 희망농장, 부화장, GP센터
- ◎ **(표시)** 가금 이동 시 “기금 이동신고서”에 “농장식별번호” 표시
 - * 계란의 경우 “원란입고표” 등에 “농장식별번호” 및 “신란일자” 등 표시
- ◎ **(신고)** 가금을 사육하는 농장경영자 또는 계열화사업자
 - **(사육현황신고)** 가금을 사육하는 모든 농장에서는 매월 1회 사육현황 신고
 - **(이동 등 신고)** 가금을 농장 간 이동 시 이동신고 또는 가축거래상인 등에 판매 시 거래신고

<도축단계>

도축업자는 가금 운송차량이 도축장에 입고 시 「기금 이동신고서」에 표시된 농장식별번호를 확인하여 이력관리시스템 등록하고, 일치 여부 확인 후 이력관리시스템에서 이력번호를 발급해야 한다. 이렇게 발급된 이력번호를 추후 가금산물(제품) 포장지 등에 표시하게 된다.

도축단계의 이력관리 요령은 다음과 같다.

- ◎ **(도축장)** 도개장(닭), 도입장(오리)
- ◎ **(신고주체)** 도축장경영자
- ◎ **(이행사항)** 이력번호 발급신청 및 표시, 도축처리결과 신고
- ◎ **(적용대상)** 닭, 오리를 도축하여 얻은 축산물
 - **(제외대상)** 염장(소금), 염지(소금이외의 첨가물, 소스 등이 혼입) 및 훈제처리를 하는 닭고기 또는 오리고기
- ◎ **(증명서발급)** 도축검사증명서 및 등급판정받은 가금류의 경우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에 이력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포장처리 단계>

포장처리업자는 포장처리 시 이력번호가 다른 개체와 섞이지 않도록 포장처리를 해야 하며 포장처리 실적과 거래내역을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하여야 한다.

- ◎ (이력번호 표시) 기금산물을 포장처리하는 최소 단위 포장지(박스, 벌크, 개체 등)에 이력번호 표시(표시방법은 라벨지, 직접인쇄 등 모두 가능)
- ◎ (포장처리실적 기록관리) 포장처리 실적신고
 - (전산신고 대상) 도축장 연접 또는 종업원 5인 이상의 업소
 - * 업체명, 소재지, 포장처리일, 이력(묶음)번호, 원료(부위명), 중량 등
- ◎ (묶음번호 구성) 농장단위(이력번호) 포장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여러 농장을 한 번에 포장처리하는 경우 묶음번호 사용
- ◎ (거래내역 기록관리 등) 입고 및 출고실적신고
 - (거래명세서 표시) 거래명세서(영수증 등)에 이력(묶음)번호 표시

<판매단계>

포장 유통되는 닭고기와 오리고기 제품 포장지에는 반드시 이력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또한 포장지를 개봉하여 재판매하는 경우나 재래시장 등에서 벌크로 입고된 닭고기 등을 진열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도 이력번호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다만, 이 경우 비용절감과 이행 대상자 편의를 위해 이력번호가 표시된 거래명세서 비치 등으로 갈음할 예정이다.

- ◎ (이력번호 표시) 입고된 포장단위로 판매(포장지에 이력번호 표시)
- ◎ (거래내역 기록관리 등) 입고되는 기금산물 거래명세서 이력번호 표시
- ◎ (이력번호 조회) 기금산물의 포장지 등에 표시된 이력번호를 조회

가금이력제 시범사업 11월부터 추진

2019년 12월 가금이력제 본 사업 시행에 앞서 오는 11월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미진사항을 발굴하고, 개선 적용함으로써 본 사업까지 안정된 시스템을 갖출 계획이다.

시범사업에는 사육단계의 최초 원종계 생산부터 도축과 포장처리 및 판매에 이르는 단계별 이행주체가 참여할 수 있으며, 닭·오리 사육 농장경영자와 계열화사업자 및 도축업자, 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가 해당된다. 시범사업을 위한 신청서 접수와 자세한 선정요건 등은 추후 시·도와 지자체 및 축산물이력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게시될 예정이다.

가금은 사육특성상 관리 수량이 많고, 개체 확인이 쉽지 않은 특징이 있다. 또한 가금 산물 유통구조도 비교적 복잡하여 이력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가금 및 가금산물의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고려할 때 철저한 준비과정과 가금산물의 산업 특성에 적합한 이력제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가금 및 가금산물 이력제에 대한 생산농가와 관련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당부드린다.